

광주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59058(본소), 2022나59065(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든 담당변호사 정윤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6. 16. 선고 2021가단70612(본소),

2021가단81148(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여수시 C 대 83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철골구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32,9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0. 16.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7,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여수시 C 대 83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에 관하여 2019. 4.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쪽 18행(1. 기초사실의 나.항 부분) ‘2015. 8. 11. 원고 명의의’를 ‘2015. 8. 11. 피고 명의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경, 판사 남수진, 판사 이미주

별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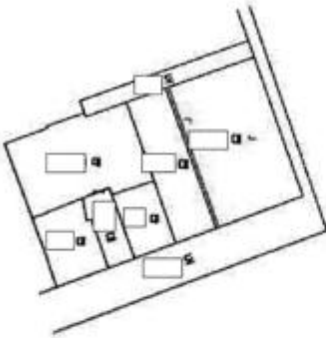
도지 소재	여수시 [] 외 1 필		측 적	$\frac{1}{1200}$
측량자	2021년 1월 7일	측량성과도 작성자	2021년 1월 7일	
	지적기사 []		지적기사 []	

현황 표시

범례	영역
[]	의료인 지정선
[]	아래변관
[]	
[]	

면적 표시

지번 부호	면적(㎡)
[]	27
[]	803
[]	830
[]	아래변관



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1월 7일

